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노동 위반 원양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7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강제노동 위반 원양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 | 3  |
| [참고자료] .....                             | 15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 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분야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 관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8조).

### Ⅲ. 검토의견

#### 1. 강제노동 위반 원양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원양어업허가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 결격 사유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br>-----<br>-----<br>-----<br>-----<br>-----<br>-----. |
| 1. ~ 17. (생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신설>                                                                                                                                         | 18.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                                                                                                                                                                                        |                                                                                                                                                                                                                                                                                           |
|----------------------------------------------------------------------------------------------------------------------------------------------------------------------------------------|-------------------------------------------------------------------------------------------------------------------------------------------------------------------------------------------------------------------------------------------------------------------------------------------|
| <p>② (생 략)</p> <p>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1. ~ 3. (생 략)</p> <p>&lt;신 설&gt;</p> <p>4. (생 략)</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결격사유) ① -----</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sup>1)</sup>는 원양어업허가 제한 사유로 수산관계 법령 및 국제

### 1)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감독·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수산기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8조2)는 원양어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사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①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 국제수산물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1.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원양산업발전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분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22년 ~ '26년) 수산분야 강제근로(외국인 포함) 적발 현황 >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제8조(폭행의금지)

(기준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연도별    | 위반건수 | 관할관서 | 업종 | 피해자 국적 | 적발내용      |
|--------|------|------|----|--------|-----------|
| 2022   | 1건   | 서산   | 어선 | 한국인    | 제8조(폭행)   |
| 2023   | 1건   | 군산   | 양식 | 외국인    | 제8조(폭행)   |
| 2024   | 4건   | 군산   | 양식 | 외국인    | 제8조(폭행)   |
|        |      | 여수   | 어선 | 미상(익명) | 제8조(폭행)   |
|        |      | 여수   | 양식 | 외국인    | 제8조(폭행)   |
|        |      | 여수   | 양식 | 외국인    | 제8조(폭행)   |
| 2025   | 1건   | 목포   | 양식 | 외국인    | 제8조(폭행)   |
| 2026.6 | 2건   | 광주   | 염전 | 한국인    | 제7조(강제노동) |
|        |      | 광주   | 염전 | 한국인    | 제8조(폭행)   |

※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 작성·제출

어업 분야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폭행이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무역 제재로 이어질 우려<sup>3)</sup>가 있으므로, 원양어업에서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 강제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3) 미국은 2026년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결과물의 역내 시장 출시·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을 2024년 12월 12일 발효시켜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위법행위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 근로기준법                                                                                                                                | 선원법                                                                                                                                            |
|--------------------------------------------------------------------------------------------------------------------------------------|------------------------------------------------------------------------------------------------------------------------------------------------|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br>(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br>(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br>(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 총톤수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4) 적용                                                                                                         |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제한·정지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4)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안 제8조제4호)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신설할 경우 현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의 취소<sup>5)</sup>가 가능하게 됨.

□ 다만, 안 제8조제1항제4호(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형벌의 종류(실형·집행유예·벌금형)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의 일반적 입법기준 및 현행 제8조의 규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형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관련성이 높은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6조의제2항<sup>6)</sup>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을 나누어 서로 다른 호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sup>7)</sup>이며,

#### 5)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6)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2~373

현행법 제8조제1항<sup>8)</sup>은 제2호에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제3호에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서로 다른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하나의 호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문 내부의 규정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결격사유의 형 기준을 “벌금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현행 제2호·제3호와의 균형 및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는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 등 원양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산 관계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보다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이라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결격사유 상호 간 균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보다 그 위반

---

8) 「원양산업발전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도가 무거운 경우로 한정하거나 결격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sup>9)</sup>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강제노동·폭행 등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행위가 원양어업 허가와 갖는 관련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형 기준을 현행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와 균형있게 설정하거나 위 수정의견과 같이 형종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합범에 대하여는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하여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특정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면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원칙이라는 의견<sup>10)</sup>도 참고할 필요가

---

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2(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 25 결정 참조)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3

있을 것으로 보임.

< 벌금형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형의 분리 선고 입법례 >

「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수산업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①결격사유를 구성하는 형벌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벌금형”의 3단계로 구분<sup>11)</sup>하고, ②벌금형의 최소기준액을 500만원<sup>12)</sup>으로 정하며, ③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sup>13)</sup>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7조제18호(원양어업허가 제한)와 관련하여 원양어업허가 제한의 명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제7조제18호를 신설할 경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정지가 가능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제한 또는 정지 사유가 ①벌금 이상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지, ②단순한 위반사실의 적발만으로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침익적 처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다만, 해양수산부는 법 위반 사실이 관결로 확정될 것을 어업 면허

11) 현행 「수산업법」 제9조 제3호,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규정과 같이 3단계로 구분 반영 (해양수산부 의견)

12) [해양수산부 의견]

(벌금 최소 기준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벌금액은 5천만원, 그 10%인 500만원을 최소 금액 설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현재 「수산업법」 제9조 제3호와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벌금 최소 기준액은 100만원

수산업법(제108조), 수산자원관리법(제65조) 등의 일반 위반행위 벌금 상한 1천만원의 10% 수준(무허가 어업·수산물 채취는 3천/2천만)

13) [해양수산부 의견]

(분리선고 일괄 반영) 다른 법률 위반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의 결합에 따른 벌금액 증가 등으로 부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방지 필요 → 분리 선고 규정 일괄 마련

\* 현행 「수산업법」(제10조), 「양식산업발전법」(제12조의2)는 해당 법률이 아닌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분리 선고 규정 有

제한·정지 등의 요건으로 할 경우, 판결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강제노동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현행법 제7조제1항14)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제한이나 정지 외에 위반 어선의 항구 계류나 출·입항 제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러한 처분의 발동까지 법 위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바,

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지 등의 요건으로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강제 근로 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하는 의견을 제시<sup>15)</sup>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을 허가 제한 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참고자료 1)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폭행은 경미한 폭행부터 상습적·중대한 폭행까

---

14)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각 호 생략)

15) [해양수산부 의견]

(취소·제한·정지사유) 해당 업에서 강제노동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제재조치 필요 → 적발된 경우로 규정  
 ⇨ 현행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입법례\*를 다른 5개 법안에 확대 적용하는 취지

\*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취소·제한·정지사유 적용 법령에 근로기준법 제외) 허가취소·영업제한·정지는 업종별 현직 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종 관련 법률만 구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이 기존 근로기준법 제7·8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동일 내용으로 대체한 규정이며, 원양어업과 관련이 있는 「선원법」 위반 사항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지 양형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경미한 폭행죄만으로도 수십명 선원의 생계가 걸린 원양어업 허가 자체가 제한받는 결과는 형사처벌의 경중과 행정제재의 경중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원양어업의 특성에 따라 기상 및 조업시 엔진소음 등의 환경상 큰 목소리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구두지시해야 하는데, 이를 언어폭력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육상 근무환경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휘와 위법한 폭언의 경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sup>16)</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9 |

16)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검 토 의 견                                                                                                                                                                                                                                                                                                                                                                                                                                            |
|------------------------------------------------------------------|---------------------------------------------------------------------------------------------------|----------------------------------------------------------------------------------------------------------------------------------------------------------------------------------------------------------------------------------------------------------------------------------------------------------------------------------------------------------------------------------------------------------------------------------------------------|
|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br>18.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1안) < 삭 제 ><br><br>(2안) 18. 「선원법」 제25조의2를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 | (1안)<br>○ 타 법에 대한 위반사실만으로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b>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제재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선사의 생존권, 종사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b> 로 현행 유지 요망.<br>-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는 개별법이 아닌 「선원법」 틀 안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져야 함.<br><br>(2안)<br>○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b>최종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b>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br>- 확정판결 없이 "위반한 경우"만으로 허가상 불이익을 준다면, 수사·기소 단계의 혐의만으로도 제한 사유가 발동될 여지가 있어 무죄추정원칙·적법절차 원칙과 충돌 소지 있음<br><br>○ 법원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고의·과실, 책임정도에 따라 |

| 개 정 안 | 수 정 안 | 검 토 의 건                                                                                                                                                                                                                                                                                                                                                                                                                                                                                                                                                                                                                                                                                           |
|-------|-------|---------------------------------------------------------------------------------------------------------------------------------------------------------------------------------------------------------------------------------------------------------------------------------------------------------------------------------------------------------------------------------------------------------------------------------------------------------------------------------------------------------------------------------------------------------------------------------------------------------------------------------------------------------------------------------------------------|
|       |       | <p>양형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제한, 정지하거나 결격사유를 적용도록 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의 전 재산인 선박에 대한 제재는 고의성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중대한 위반에 따른 제재인 징역 이상시 검토하도록 함.</li> </ul> <p>○ 「근로기준법」 제7조는 「선원법」 개정('15.1.6)시 제5조에 따라 적용되어 왔던 「근로기준법」 제7조를 삭제하면서 제25조의2를 신설한바, 병기할 실익이 적음.</p> <p>○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폭행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은 경미한 폭행(예: 우발적 밀침, 경미한 신체접촉)부터 상습적·중대한 폭행까지 양형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경미한 폭행죄만으로도 수십명 선원의 생계가 걸린 원양어업 허가 자체가 제한받는 결과는 형사처벌의 경중과 행정제재의 경중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li> <li>- 원양어업의 특성에 따라 기상 및 조업시 엔진소음 등의 환경상 큰 목소리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구두지시해야 하는데, 이를 언어폭력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육상 근무환경과</li> </ul> |

| 개 정 안                                                     | 수 정 안                | 검 토 의 건                                                                                                                                                                                                                                                                                                                                                                                                                                                                                                                                                                                                                                                     |
|-----------------------------------------------------------|----------------------|-------------------------------------------------------------------------------------------------------------------------------------------------------------------------------------------------------------------------------------------------------------------------------------------------------------------------------------------------------------------------------------------------------------------------------------------------------------------------------------------------------------------------------------------------------------------------------------------------------------------------------------------------------------|
| <p>제8조(결격사유)</p> <p>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p> | <p>&lt; 삭 제 &gt;</p> | <p>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휘와 위법한 폭언의 경계 불명확.</p> <p>※ 육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만을 이유로 사업허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일반적 인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원양어업에 대해서만 조업허가 제한이라는 중대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비례성과 형 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p> <p>○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의 위법행위인 강 제 근로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에 '대양'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비상 상황에서 선장의 정당한 지 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p> <p>- 원양어선은 원거리 조업의 특성상 즉시 입항이 어렵기 때 문에 물리적으로 즉시 하선이 불가능함. 이에 선박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이나, 위험 상황 또는 즉시 입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 선내 대기 조치, 승조원 간 마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선실 분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비상상황이나 안전 관리 시에도 선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가 위축되어 오히려 선박 전체의 안 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음.</p> <p>○ 동 신설안은 대양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사에서 충분한 주의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통제함에도 불구하고</p> |

| 개 정 안                                                                                                                                                              | 수 정 안 | 검 토 의 견                                                                                                                                                                                                                                                                                  |
|--------------------------------------------------------------------------------------------------------------------------------------------------------------------|-------|------------------------------------------------------------------------------------------------------------------------------------------------------------------------------------------------------------------------------------------------------------------------------------------|
| <p><u>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u><br/> <u>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u><br/> <u>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u><br/> <u>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u><br/> <u>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u><br/> <u>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       | <p>고, 개인의 일탈(돌발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면 선사 전체의 어업허가가 상실되어 선사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타 어선 승조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과잉처벌이 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p> <p>-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권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해외 경쟁국 및 글로벌 수산기업과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p> |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 □ 검토 의견: 부대 의견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br>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격사유) ① -----<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개정안은 형벌의 종류(실형, 집행유예, 벌금형)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벌금형은 벌금의 납부 시기에 따라 집행종료시점이 달라지므로, 각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의 입법 모델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벌금 이하의 형을 구분함으로써 조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6) 입법 모델」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